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393 배당이의

원 고 A 유한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군

소송대리인 B, C, D, E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3. 20.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G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903,4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7,739,213원을 489,642,64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J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6.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2015. 12. 16.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2016. 6. 1.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이 2017.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이 법원 G)하여 2017.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소외 은행은 2017. 6. 2. K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K 주식회사는 2017. 6. 28. 소외 은행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8. 금융감독원에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이 이루어졌고, 소외 은행은 2017. 6. 29. 위 법 제7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7. 18.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971,809,511원 중 피고(교부권자, 당해세)에게 1순위로 1,263,520원, 2순위(교부권자, 2015. 5. 26. 조세)로 24,560,000원, 신용보증기금에게 3순위로 30,993,396원, 피고(교부권자, 2015. 11. 24. 조세)에게 3순위로 57,253,430원, 2015. 5. 26.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449,909,952원, 2015. 12. 16.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407,739,21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7. 24. 이 사건 소[피고(교부권자, 2015. 05. 26. 조세)에 대한 배당액 24,560,000원, 피고(교부권자, 15. 11. 24. 조세)에 대한 배당액 57,253,430원]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그 후 감면받은 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법정기일은 2017년경이고, 그 전에 설정등기가 마쳐진 위 2015. 5. 26.자 및 2015. 12. 16.자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은 24,560,000원과 57,253,43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8. 7. 18. 배당이 종결·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그 이의 있는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소외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가. 인정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15.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redacted]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2014. 12. 3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과세면제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세의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은 사실[1], 채무자는 2015. 11. 24. 원시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15. [redacted]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과세면제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은 사실(이하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4. 13.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법원 F)이 내려진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위 임의경매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고[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홍성군수는 2017. 7. 10. 채무자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

1)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각 세액은 채무자가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것이고, 법령에 따른 세액은 부과현황(을 제5호증)의 본세란의 각 금액이고, 당시 면제된 세액도 이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한편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가목의 '신고한 해당 세액'이라 함은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해당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2015. 5. 26. 및 2015. 12. 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관련법령에 의한 면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감면세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2015. 5. 26. 및 2015. 12. 15.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법정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채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자에게 발송한 날인 2017. 7. 10.이 된다.

따라서 원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 6. 28. 금융위원회에 위 유동화 자산의 양도가 등록됨으로써 원고는 소외 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취득한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5. 5. 26. 및 2015. 12. 16.보다 그 법정기일이 늦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903,4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7,739,213원을 489,642,64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바,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2015. 5. 26. 및 2015. 12. 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 다만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처분되는 것은 감면처분의 원인이 사후에 해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된 후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15. 5. 26.과 2015. 12. 15.이다.

(2) 판단

법정기일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특정시점을 법정기일로 삼음으로써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9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되어서 부과될 지방세가 없는 것으로 믿고 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사후에 과세관청이 그 담보목적물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법정기일은 소급하여 당초의 취득 및 감면사실을 신고한 날이라고 본다면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된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에 대한 배당액 81,903,4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7,739,213원을 489,642,643원으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희길